

의안번호	2205935
의 퇴 인	정점식의원
회 답 일	2024.12.13.
추계번호	24C5136
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립·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947억원, 2030년 1,05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,973억원(연평균 99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자살예방센터의 설치 (안 제13조)	947	963	992	1,021	1,050	4,973	995

주: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자료 등을 참조하여 추계한 결과이며,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3조 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	○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·운영해야 함 (제1항) 1. 자살 관련 상담 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·훈련 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	의무규정
2	안 제15조 (자살예방시설물의 설치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등 공공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음 (제1항) ○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빈발장소에 자살예방을 위한 시설물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(제2항) ○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3조 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	○	· 보건복지부의 의견 및 자료 등을 참조하여 추계 · 본 추계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설립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, 자산취득비, 를 정부가 전액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2	안 제15조 (자살예방시설물의 설치)	×	·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자살예방장소의 지정 장소와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의 종류 및 단가, 비용지원의 범위 및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정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자살예방센터 의무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2024년 12월 기준,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 자살예방센터는 총 13곳, 기초지자체는 42곳으로, 개정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할 센터 수는 광역지자체 4곳, 기초지자체 184곳임
- 기존에 운영 중인 광역지자체 자살예방센터와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평균 인력수, 1인당 인건비, 평균 운영비, 평균 사업비를 준용하여 추계
 - 명목임금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
 - 자살예방센터 인건비 추계 시 명목임금상승률, 자산취득비 추계 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활용
 - 사무실 임차료는 정신건강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시설을 활용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
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자살예방센터를 신규 설립·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, 인건비, 기본경비, 사업비, 자산취득비 전액을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 - 본 추계에서는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자살예방센터 1개소당 소요되는 설립·운영 단가에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자살예방센터 수를 곱하여 산출 (광역 4곳, 기초 184곳)
- (인건비) 자살예방센터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는 기존의 설치·운영 중인 광역·기초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평균 인원수와 인건비를 준용하며, 해당 인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 - (광역)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13곳의 광역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평균 인원수는 21명이고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3,903만원임
 - (기초)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42곳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평균 인원수는 9명이고 1인당 연평균 인건비는 4,014만원임
 - 추계기간 동안 인건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

[표 3] 자살예방센터 설립·운영에 따른 인건비(추정치)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광역	35	36	37	38	40
지방	709	732	756	780	80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운영비·사업비) 기존의 운영 중인 광역·기초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평균 인원수와 인건비를 준용

- (광역)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13곳의 광역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개소당 연평균 운영비는 1억 1,967만원, 연평균 사업비는 3억 7,896만원임
- (기초)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42곳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센터의 개소당 연평균 운영비는 282만원, 연평균 사업비는 8,553만원임
- 추계기간동안의 운영비·사업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

[표 4] 자살예방센터 설립·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(추정치):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
운영비	광역	5	5.1	5.2	5.3	5.4
	기초	5.4	5.5	5.7	5.8	5.9
사업비	광역	16	16	17	17	17
	기초	164	168	171	175	17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자산취득비) 개정안 시행 첫해인 2026년에만 발생하며,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(2026년 기준 704.7만원) 추정치를 적용하여 산출

[표 5] 자살예방센터 설립·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(추정치)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
자산 취득비	광역	59	—	—	—	—
	지방	1,166	—	—	—	—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개정안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립·운영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 947억원, 2030년 1,05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,973억원(연평균 99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구분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광역	인건비	35	36	37	38	40		
	운영비	5	5.1	5.2	5.3	5.4		
	사업비	16	16	17	17	17		
	자산취득비	0.6	—	—	—	—		
	소 계 (A)	56.6	57.1	59.2	60.3	62.4	295.6	59.1
기초	인건비	709	732	756	780	804		
	운영비	5.4	5.5	5.7	5.8	5.9		
	사업비	164	168	171	175	178		
	자산취득비	11.7	—	—	—	—		
	소 계 (B)	890.1	905.5	932.7	960.8	987.9	4,677	935.4
합계 (A+B=C)		947	963	992	1,021	1,050	4,973	99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에서는 기존 자살예방센터의 실적치를 참조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였으며, 향후 실제 인력 규모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장우윤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4741	jangwy93@assembly.go.kr